

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군포시의회 이훈미 의원 등이 발의한 「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제1항 및 「군포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9일

군 포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: 첨부 조례안 참고
2.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

가. 제출기한 : 2023년 2월 13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FAX

다. 제출내용

1) 조례안에 대한 의견 (붙임 서식 참조)

2) 성명(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라. 제출기관 : 군포시의회 (참조: 의회사무과)

1) 주 소 :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

2) 전화번호 : 031-390-8713, FAX 031-392-4004

3) 전자우편 : fair1110@korea.kr

- 붙임 1. 의견서 서식 1부.
2. 조례안 1부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훈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	
번호	

발의연월일 : 2023. 2. .

발 의 자 : 이훈미, 이길호, 신경원,
김귀근, 신금자, 이우천,
이동한, 박상현, 이혜승

1. 제안이유

- 「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」의 상임위원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「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」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의원이 군포시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·의결할 때는 그 심의·의결을 회피하도록 함 (안 제7조제1호)

3. 관련법령

-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
- 「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」

군포시 조례 제 호

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호 중 “특별위원회”를 “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)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시 및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·심의회·협의회 등(이하 “위원회 등”이라 한다)의 위원으로 활동해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·의결할 때는 그 심의·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.</p> <p>1. 의원이 소속된 <u>특별위원회의</u>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7조(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</u>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